

#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제·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으로 확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이 규칙의 제명을 “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”에서 “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”으로 변경함
-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뿐 아니라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, 심리,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)

#### 4.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”을 “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, 심리, 재판등”을 “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, 심리, 재판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”를 “신문 등,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(이하 “정기간행물 등”이라 한다)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(이하 “등록취소심판 등”이라 한다)의 청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등록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”을 “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정기간행물이 등록된”을 “정기간행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.

1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
2.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
3.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

제5조제1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“발행인 또는 대리인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
2.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
3.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

제6조 중 “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절차”를 “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구”를 “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</u></p> <p>제1조 (목적)</p> <p>① 이 규칙은 <u>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</u>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, 심리, 재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 (청구의 방식)</p> <p>① <u>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 청구인, <u>등록취소를 구하는 정</u></p>	<p><u>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</u></p> <p>제1조 (목적)</p> <p>① ----- 「<u>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<u>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</u>, 「<u>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<u>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</u> 및 「<u>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<u>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, 심리, 재판 등에-----</u> -----.</p> <p>제2조 (청구의 방식)</p> <p>① <u>신문 등, 뉴스통신 및 정기간행물(이하 “정기간행물 등”이라 한다)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(이하 “등록취소심판 등”이라 한다)의 청구는-----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, <u>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</u></p>

기간행물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 
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수의 부  
분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정  
기간행물이 등록된 사실을 증명  
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 (피청구인)

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청  
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 
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 
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  
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조 (심문기일)

① 법원은 제4조 규정에 의한  
심판청구서 부분의 송달 후 특  
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

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 
-----  
-----.

③ ----- 정기간행  
물 등이 신고 또는 등록된 ---  
-----.

제3조 (피청구인)

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 
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 
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  
여야 한다.

1.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 
률」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 
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
2.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  
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 
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
3.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  
흥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또는  
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 
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

제5조 (심문기일)

① -----  
-----  
----- 지체 없이

신문기일을 열어 발행인 또는 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6조 (증거조사)

인증·감정·서증·검증·당사자신문·증거보전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절차에 이를 준용한다.

제11조 (재판)

①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---- 다음 각 호의 사람을 -----.

1.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

2.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

3.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 (증거조사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절차-----.

제11조 (재판)

①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578